

수출입곡물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 및 그 실시조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 보강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수출입(국경통과 포함)곡물검험검역 감독관리에 적용된다.

본 방법에서 곡물이라 함은 가공, 비변식용 곡류, 유류, 기름 작물 등 종자 및 감자류의 괴근(뿌리) 및 괴경(덩이줄기)를 가리킨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아래 ‘국가질검총국’이라 한다)은 전국 수출입곡물 검험검역 감독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지에 설립하는 수출입검험검역부(아래 ‘검험검역기관’)는 각자 관할 지역 내 수출입곡물의 검험검역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4조 국가질검총국 및 검험검역기관은 수출입곡물 품질 안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실시한다. 리스트 분석에 기초하여 수출입곡물 제품 유해 생물 휴대 여부 리스크 분석, 감독관리 시스템 평가 및 심사, 검험검역요구 확인 및 해외생산업체 등록 등 포함된 검험검역 수입 허가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 수출입곡물 수취인 및 생산, 가공, 저장, 운송업체는 법에 따라 생산해야 하며 곡물품질 안전통제시스템 및 전염병방제시스템을 설립 및 실시하여 수출입곡물 품질 안전을 책임지고, 성실하여야 함은 물론 사회적 감독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장 수출입검험검역

제1절 등록

제6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곡물 해외생산, 가공, 저장업체(아래 ‘해외생산가공업체’)에 대해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해외생산가공업체는 수출국가나 해당지역의 법률법규 및 기준의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 관련 법률법규 및 강제적 기준의 요구도 부합해야 한다.

등록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곡물해외생산가공업체는 중국에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나 해당 지역 주관기관 심사 합격 후 중국국가질검총국에 추천한다. 중국질검총국은 추천 자료를 받아 심사하여 확인 후,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나 지역의 해외생산가공업체 등록을 허가한다.

해외생산가공업체의 등록 유효기간은 4년이다.

연장할 필요가 있는 해외생산업체는 수출국이나 지역 주관기관 유효기간 만기 전 6개월 내에 중국질검총국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중국국가질검총국 확인 후 등록 유효기간은 4년으로 연장된다. 필요시에 중국국가질검총국은 해당 국가나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감독관리시스템에 대한 리뷰 심사를 실시하며 연장 신청하는 해외생산가공업체에 대해 임의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등록된 해외생산가공업체의 대 중국 수출 곡물 검험검역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그 정도가 심할 때에는 중국국가질검총국에서 등록을 해지시킬 수 있다.

제7조 대 중국 곡물을 수출하는 해외생산가공업체는 수출국이나 지역 주관기관의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아울러 체질, 이물질 제거, 건조, 방역 등 품질안전 통제시설 및 품질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필요시에 중국국가질검총국은 전문가를 파견하여 해외 실시 시스템을 시찰하여 전염병상황조사, 생산, 가공, 저장업체조사 및 예비검사 및 포장감독 등을 실시한다.

제2절 검험검역

제8조 중국국가질검총국 수입 곡물 실시하는 검역 허준제도

처음 수출국이나 특정 지역에서 모종 곡물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이나 해당 지역 공식 주관기관은 중국국가질검총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해당 곡물 재배 및 저장운송 과정 중의 병충해 발생 종류, 위해정도, 통제현황, 품질안전통제시스템 등 기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입업체가 신청하여 기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국가질검총국은 수입 곡물 리스크 분석, 현지시찰 및 대외협상을 실시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중국법률법규 및 국가기술규범의 강제 요구에 따라 수입 곡물의 구체적인 검험검역 요구를 제정하여 수입 허가된 곡물종류 및 생산국가 혹은 지역리스트를 공개한다.

수입 허가된 곡물종류 및 생산국이나 지역에 대하여 중국국가질검총국은 전염병동향, 수입 전염병발견 및 기타품질상황에 따라 수입 곡물의 구체적인 검험검역 요구 및 리뷰 심사를 실시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 시찰, 예비검사, 포장감독 및 대외협상을 실시한다.

제9조 수입 곡물은 중국국가질검총국에서 지정한 항구로 수입하여야 한다. 지정항구 조건 및 관리범위는 국가질검총국에서 제정한다.

제10조 중국국가질검총국 수입 곡물에 대해 검역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수입곡물의 화주는 무역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수입동식물검역심사관리방법> 등 규정에 의거하여 검역심사를 신청해 <중화인민공화국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이하 <검역허가증>), 국가곡물품질안전요구, 동식물검역요구 및 <검역허가증> 중 규정하는 관련요구조항을 무역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항구여건제한 등 원인으로 수입 곡물은 면역 및 감독관리 조건에 부합하는 지정 저장 및 가공 장소로 운송하여야 한다. <검역허가증> 신청 시 화주 혹은 대리인은 지정장소를 명확히 지정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문서 역시 제출하여야 한다. <검역허가증>이 없는 곡물은 수입할 수 없다.

제11조 검험검역부문은 아래와 같은 요구에 따라 수입 곡물에 대한 검험검역을 실시한다.

1. 중국정부 및 곡물수출국이나 지역정부 간에 체결한 양자협약, 협정서, 비망록 및 기타 양자협약에서 확정된 관련 요구.
2. 중국법률법규, 국가기술규범 강제적 규정 및 국가질검총국에서 규정하는 검험검역 요구.
3. <검역허가증>에 제시된 검역요구

제12조 화주 혹은 그 대리인은 곡물을 수입하기 전 수입항구검험검역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곡물 수출국이나 지역 주관기관에서 발급하는 식물검역증서
2. 원산지증서
3. 무역계약서, 신용장,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수증 등 무역증빙

4. <검역허가증> 및 기타 규정에서 요구하는 증빙

5. 양자협약, 협정서, 비망록에서 확정한 증빙 및 국가질검총국에서 규정하는 기타 증빙.

유전자변형작물을 수입할 경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 등 관련 허가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화주가 해외 곡물 수출업체에 수출국이나 지역 주관기관, 혹은 제3자 검사측정기관 발급하는 품질증서, 위생증서, 적재적당증서, 무게증서 등 기타증서를 요구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3조 수입곡물 선적 훈증 처리 가능

현장 검사 전, 수입 곡물 운송인 혹은 그 대리인 수입항구검험검역기관에 서면으로 수입 곡물 선적 훈증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미리 환기를 시켜야 한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검험검역기관 현장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현장 검사를 통해 훈증 잔류물질이 발견될 경우 혹은 훈증 잔류 기체농도가 안전 제한량을 초과할 경우, 검험검역 및 관련 현장 검사를 정지한다. 훈증 잔류물질 제거 후, 또한 잔류 기체농도가 안전제한량 이하일 경우, 현장 검험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선적으로 벌크 곡물을 운송할 경우, 검험검역기관은 정박지에서 화물 표면 검험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품질안전에 중대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항구로 입항할 수 있다. 벌크 곡물은 항구에서 지속적으로 검험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박 검험검역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검험검역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적 컨테이너, 기차, 자동차 등 기타 방식으로 곡물을 수입할 경우, 검험검역기관에서 지정한 검사장소에서 검험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검험검역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이전할 수 없다.

제15조 검험검역기관은 수입곡물 현장 검험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검험검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화물 증서 검사. 증서와 화물의 명칭, 수(중)량, 수출 저장·가공 업체명 및 그 등록번호 등 정보를 확인한다. 선박으로 벌크 화물을 운송할 경우, 지난 운항 시 선적된 화물 및 재고조사 상황을 검사해야 하며 선적된 곡물의 품질안전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컨테이너로 선적될 경우, 컨테이너 번호 및 표기 사항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2. 현장검사. 곡물의 습도, 곰팡이 유무 및 변질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곤충 및 잡초 씨앗 등 유해생물 유무 역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잡곡, 병균 감염 식물, 토양, 훈증제 잔여물, 동물 시체, 동물 배설물 및 기타 수입 금지된 물질 등의

혼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3. 샘플링.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샘플링하여 실험실에서 검사측정을 실시한다.
4. 기타 현장 검사

제16조 검사검역기관은 관련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샘플링된 샘플 및 발견된 물질에 대하여 실험실에서 검사측정을 시행해야 하며 검험검역 결과보고를 발급해야 한다.

실험실 검측 샘플은 최소 3개월 간 보존해야 한다. 검측결과에 이상이 있어 대외적으로 증명을 해야 할 경우, 샘플은 최소 6개월 보관해야 한다.

제17조 수입 곡물이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검험검역기관 감독 하에 항구 정박지, 항구 혹은 지정된 검역감독관리 장소에서 훈증, 소독 혹은 기타 유해물질 제거 처리를 해야 한다.

1. 검역성 유해 생물 혹은 기타 검역 리스크가 있는 살아있는 유해곤충을 발견하여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2. 종자분의(Seed Dressing), 훈증제 오염, 독이 있는 잡초 씨앗 기준치 초과 등 안전문제가 발견되었고, 유효한 기술적 처리 조치 방안이 있는 경우.
3. 기타 원인으로 곡물 품질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제18조 수입곡물이 아래와 같을 경우, 반품 혹은 소각처리를 한다.

1. 국가질검총국 수입 허가 리스트에 없거나 곡물 수출국 혹은 지역 주관기관에서 발급하는 <식물검역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검역허가증>이 없을 경우.
2. 독이 있는 유해물질 및 기타 안전 위생 검측결과가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유효한 처리 방법이 없을 경우.
3. 유전자변형성분이 검출되었을 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 등 관련 허가문서가 없거나 증서 및 허가문서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4. 토양, 검역성 유해생물 및 기타 수입 금지된 물질이 발견되었을 시 유효한 검역처리방법이 없을 경우.
5. 수분, 곰팡이 등 변질을 일으키거나 화학적 혹은 방사성 오염이 되어 해당 용도를 변경할 수 없거나 유효한 처리방법이 없을 경우.
6. 기타 원인으로 곡물 품질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제19조 수입 곡물이 검험검역을 받은 후 검험검역기관은 수입화물검험검역 증명 등 관련 증서를 발급한다. 검험검역이 불합격되었을 시, 검험검역기관은 <검험검역처리 통지서> 및 관련 검험검역증서를 발급한다.

제20조 검험검역기관은 수입곡물에 대한 검역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수입곡물은 방역,

처리 등 여건을 갖춘 지정 가공장소에서 가공, 사용해야 한다. 유효한 유해물질 제거 처리 및 가공처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수입곡물은 바로 시장에 진출하여 유통될 수 없다.

수입곡물 하역, 운송, 가공, 잔여물 처리 등 부분은 누출예방, 밀봉 등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입곡물 가공과정 중 잡초씨앗, 병원균 등 유해생물을 효과적으로 소멸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곡물 가공 잔여물은 유효한 가열처리, 분쇄 혹은 분소 등 유해물질 제거 처리를 하여야 한다.

검험검역기관은 수입곡물 중 검출된 잡초 등 유해생물의 정도, 이물질 함량 및 기타 품질 안전 상황에 따라 지정 가공, 운송업체의 방역처리여건 등 요소를 결합하여 수입곡물 가공 감독관리 리스크 등급을 확정하고, 관련 업체의 방역통제, 모니터링 등 안전제어조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입 곡물이 비축, 선도 등 특수용도에 사용될 경우, 생산, 가공, 저장은 국가질검총국의 상응한 검험검역 감독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2조 과학연구, 박람회 참가, 샘플 등 특수 원인으로 국가질검총국 허가 리스트 내에 없는 곡물을 소량으로 수입할 경우, 질검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수입특허검역 심사를 받아 <검역허가증>를 취득해야 한다.

제23조 수입 곡물 하역, 저장, 가공은 기타 검험검역 기관과 연관될 경우, 각 연관 검험검역기관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상호 소통 가능한 체계를 조성한 후 서로 검험검역 현황 및 감독관리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출항지가 다른 수입 곡물은 검험검역기관이 통과를 허가하기 전 서로 검험검역 현황을 공유해야 한다. 상대방 측에서 증서 발급 필요시 관련 검험검역기관 간에는 충분한 협상을 거친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수입 항구에서 전출되는 수입 곡물의 경우 항구검험검역기관은 전출 전 지정 운송지 검험검역기관에 수입곡물전출연락서(调运联系单)를 발급해야 한다.

제24조 해외 곡물이 중국 국경을 넘을 경우, 화주 혹은 대리인이 미리 국가질검총국 혹은 검험검역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국경통과노선, 운송방식 및 관리 조치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국경통과곡물 검험검역 감독관리방안을 제정한 후 해당 방안에 따라 국경을 통과하여 검험검역기관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수입 곡물은 밀봉 형태로 운송해야 하며 공기 중에 노출할 수 없다. 검험검역기관의 허가가 없이는 포장을 떼어내거나 운송도구에서 내릴 수 없다.

제4장 리스크 및 감독관리

제1절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제33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 곡물에 대해 전염병 상황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한다. 관련 모니터링 기술 지침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제정한다.

검험검역기관은 곡물 수입항구, 저장창고, 가공장 주변지역, 운송노선 중 곡물 운송 및 포장 변경 시 곡물의 누락이 쉬운 지역에서 잡초 등 검역성 유해 생물 모니터링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염병이 발견될 경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염병의 원인을 분석하여 업체에서 유효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관련 업체는 전염병 상황 모니터링 및 유해물질 제거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출국 혹은 지역의 검역요구에 따라 검험검역기관은 곡물 재배지역, 수출저장창고 및 가공업체 주변 지역에서 전염병 상황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제34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곡물에 안전위생 리스크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여 수출입 곡물 안전위생 리스크 모니터링계획을 제정한다.

제35조 국가질검총국 및 검험검역기관은 곡물 품질안전정보 수집 통보 시스템을 설립하고, 정보의 출처는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수출입 곡물 검험검역 중 발견된 곡물 품질안전 정보
2. 수출입 곡물 무역, 저장, 가공업체 품질관리 중 발견된 곡물 품질안전 정보
3. 검험검역기관에서 실시하는 전염병 상황 모니터링, 안전위생 리스크 모니터링 과정 중 발견된 곡물 품질안전 정보
4. 국제조직, 해외정부기관, 국내외 협회 및 소비자에 민감한 곡물 품질안전 정보
5. 기타 곡물 품질안전 리스크에 관한 정보

제36조 국가질검총국 및 검험검역기관은 곡물 품질안전정보에 대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관련 곡물 리스크 등급을 확정하여 적극적 리스크 등급별 관리를 실시한다.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수출입 곡물 검험검역 관리 및 감독관리 방안 및 감독조치를 조정한다.

제37조 수출입 곡물에 중대한 전염병 및 중대한 품질문제가 발견될 경우, 국가질검총국 및 검험검역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응급예비방안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경보를

발표한다. 곡물에 안전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국가질검총국 및 검험검역기관은 제시간에 정보를 해제해야 한다.

제38조 국가질검총국 및 검험검역기관은 상황에 따라 중요한 곡물 안전 리스크 정보를 지방정부, 농업과 곡물행정관리기관, 국외주관기구, 수출입 곡물 업체 등 관련 기구와 업체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곡물안전정보 공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2절 감독관리

제39조 수입곡물 저장, 가공에 종사하는 업체는 소재지 검험검역기관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검험검역기관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제정한 관련 요구에 따라 신청업체의 심청자료, 공정절차에 대한 검험평가를 실시하여 저장, 가공 곡물의 종류 및 능력을 심사한다.

수입곡물의 저장 및 가공에 종사하는 업체는 유효한 품질안전 및 추적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방역, 처리 등 품질관리 통제요구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40조 검험검역기관은 지정된 업체에 대해 검역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지정된 업체, 수하인 및 그 대리인은 중대한 전염병 혹은 공공위생문제를 발견할 경우, 즉시 소재지 검험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검험검역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41조 수출입 곡물을 취급하고 있는 수하인 및 그 생산, 가공, 저장 및 운송업체는 상응하는 곡물 수출입, 하역, 운송, 저장, 가공, 잔여물 처리, 발송 등 생산 경영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품질추적 및 안전예방 등 상세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록 보존기간은 최저 2년으로 한다.

제42조 수입 곡물에 중대한 안전품질문제가 발생할 시, 인체 건강 혹은 농림축산업 생산 생태 안전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곡물 수하인은 즉시 자발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조치를 취해 손실을 피하거나 줄여야 하며 회수 기록을 하는 것과 동시에, 회수 및 처리현황을 소재지 검험검역기관에 보고한다.

수하인이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을 경우, 직속 검험검역국에서 회수통지서를 발부하여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 시 국가질검총국이 회수 명령을 내린다.

제43조 국가질검총국 및 검험검역기관은 품질관리, 시설조건, 안전 리스크 예방, 신용

경영상황에 따라 업체에 부류별로 관리를 실시한다. 등급이 다른 업체에 수입검역심사, 수출입 검험검역 및 일상감독관리 등 상응한 검험검역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분류관리 규범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제정한다.

제5장 법률적 책임

제44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검험검역국은 <수출입동식물검험검역실시조항>에 근거하여 5000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검사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검사 및 신고한 곡물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번의 위반행위가 발생 시 발급된 검역 증서를 취소시킨다.

제45조 법에 근거하여 수입 곡물의 검험검역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검험검역 부서는 <수출입동식물검험검역법실시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6조 검사신고를 진행하지 않거나 검험을 진행하지 않은 수출입 상품목록에 있는 수출입 곡물을 판매할 경우 검험검역 부서는 <수출입상품검험검역실시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상품가치의 5%에서 20% 사이의 벌금을 가한다.

제47조 수출입곡물의 수취인, 생산, 가공, 보관, 운수를 담당하는 기업이 본 방법의 41조에 근거하여 생산경영 기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검험검역부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경고처분을 진행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3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48조 아래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면 검험검역국은<수출입동식물검험검역실시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3000위안이상 3만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검험검역부서의 허가가 없이 불법으로 곡물을 수입하거나 운송할 경우, 자의로 곡물을 지정된 검험장소에서 이동할 경우.
2. 자의로 수입 중인 곡물의 포장을 뜯거나 동식물 검험검역 포장라벨을 훼손시킬 경우.

제49조 곡물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수취인, 발송인, 혹은 대리인, 신고담당자가 수출입하는 곡물의 실제 현황을 수출입 목록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검험검역 증서를 취득 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검사를 피할 경우 검험검역부서는 <수출입상품검험검역법실시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상품가치의 5%에서 20%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0조 검험증서, 인감, 로고, 포장, 통관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으나 형사 처벌의 정도에 미치지 않을 경우, 검험검역부서는 <수출입상품검역실시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수정할 것을 명령하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상품가치액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 형에 처한다.

제51조 아래의 상황중 하나에 부합되나 불법 범죄에 속하지 않으며 처벌을 가하지 않아도 될 경우 검험검역부서는 <수출입동식물실시조례>규정에 근거하여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동식물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2. 동식물검험검역증서 인감, 로고,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경우

제52조 본 규정에 근거하여 생산, 가공, 저장을 진행하였으나 수출입 곡물의 검역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본 규정에 의하여 반송 처리를 하는 동시에 소각을 진행하며 그 정도가 엄중할 시 검험검역부서는 <수출입동식물검험검역조례>규정에 근거하여 등록을 취소한다.

제53조 검험검역부서에서 선택한 샘플에 대하여 몰래 바꿔치기를 했을 경우 검험검역부서는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그 정도가 엄중할 때 상품가치의 10%이상 50%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4조 검험검역부서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혹은 선박, 비행기, 차량 등 운송도구를 이용하여 곡물을 운송하지 않았을 경우 검험검역부서는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규정에 근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험검역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컨테이너, 선박, 비행기, 차량을 이용하여 곡물을 운송하였을 경우 검험검역부서는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규정에 근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면 검험검역부서는 3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수입된 곡물에 중대한 품질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인체건강, 농림축어업 생태계에 중대한 피해를 가했으나 곡물을 회수 하지 않았을 경우
2. 수입된 곡물을 회수 혹은 처리한 현황을 검험검역 부서에 보고 하지 않았을 경우
3. 수입곡물을 검험검역부서에서 지정한 곳에 저장하지 않았을 경우
4. 본 방법의 17조에 나열한 상황으로 유효한 검역처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56조 아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면 검험검역부서는 3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처한

다.

1. 수입된 곡물을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생산, 가공, 저장을 하지 않은 경우
2. 동식물 검험검역 증서를 매매하거나 절도한 경우, 혹은 동식물 검역증서의 인감, 로고,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경우
3. 국가 혹은 지역 정부의 검험검역 증명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경우
4. 검험검역부서의 검역 감독을 거부하였을 경우

제57조 검험검역부서의 직원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검험검역 결과를 위조했을 경우, 직업에 충실 하지 않아 증서 발급이 지연 되었을 경우에 법에 근거하여 처분을 진행 하며, 범죄에 해당 시 법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칙

제58조 비가공 및 직접 판매하는 수출입 곡물의 검험검역 감독관리는 국가질검총국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59조 국경무역방식으로 소량 수입하는 곡물은 국가 질검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 본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책임을 지고 해석한다.

제61조 본 방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질검총국이 2001년 12월 발표한 <수출입곡물및사료검험검역관리방법>(질검총국령 제7호) 이와 동시에 폐지된다. 이전의 수출입곡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